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339

발의연월일: 2025. 5. 2.

발 의 자:임미애·허성무·윤준병

권향엽 • 박해철 • 윤종오

임오경 · 전종덕 · 최민희

장종태 · 황명선 · 이광희

이원택 • 윤건영 • 송옥주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친환경 및 웰빙 문화 확산으로 정확하게 표기된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소비자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공영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중량미달, 속박이, 개수조작 등 불량 출하 농산물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표준화 검사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또한, 불량 출하자에 대한 제재 조치 이후에도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재출하가 가능하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매시장 출하자에 대하여 표준규격 등 출하 농수산물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등급표준화 검사를 법률에 규정하여 전국 도매시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검사결과 기준에 미 달한 농산물 출하자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의 출하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도매시장통합홈페이 지 등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며, 궁극적으로는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8조의 3 신설 등).

법률 제 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8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8조의3에 따른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8조의3(출하 농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등급표준화 검사 등) ① 출하 자는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 및 제5조의2에 따른 권장품질표시(이하 "표준규격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가 표준규격등 품질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표준규격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등급표준화 검사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 중 시는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을 허가한 도지사 소속의 검사기관에 등급표준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3항에 따른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출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4항에 따른 출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른 등급표준화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출하제한의 기준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제3항제3호 중 "제38조의2제2항에"를 "제38조의2제2항 또는 제38조의3제4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표준규격등에 미달되는 농수산물을 출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도매 제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 수산물의 수탁을 거부・기피하 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 매를 거부 · 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38조의3에 따른 등급표 준화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 달되는 경우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8조의3(출하 농수산물의 품질 관리 및 등급표준화 검사 등) ① 출하자는 도매시장에 출하 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 및 제5조의2에 따른 권장품질표시(이하 "표준 규격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가 표준규격등 품질 기준을 준수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표준규격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등급표준화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 중 시는 제17조제 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을 허가한 도지사 소속의 검사기관에 등급표준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3항에 따른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그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농수산물 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출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90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 3.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 3. 제38조의2제2항 또는 제38조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타인명 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한 자

<신 설>

3의2. (생 략) 4. ~ 6. (생략) 따른 출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정보를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등급표준화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출하제한의 기준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정보 공 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 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90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 1. 2. (현행과 같음)
- 의3제4항에-----

3의2.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 여 표준규격등에 미달되는 농 수산물을 출하한 자

3의3. (현행 제3호의2와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